### 주요 Q&A

### 「호흡기전담클리닉」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제 1-1 판

2022. 1.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 목 차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일반사항8
Q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 8 Q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 9
Q3.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9
Q4.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운영하다가 그만 둘 수 있나요?10
Q5. 서울형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형 모형에 참여하고 있으니 신속항원검사만 운영한다고 체크하면 될까요? 10
Q6. 병원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2. <mark>진단검사 관련 ···································</mark>
Q1. 신속항원검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Q2.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내원시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해야하는지? 12
Q3.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가능한지? ··············· 12
Q4.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위한 검체체취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해도 되는지?
Q5.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13
Q6. 운영지침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어떠한 검사키트를 활용하는
것인지? 13
Q7.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행 인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해야하는지?ㆍ14
Q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지?···· 14
Q9. 만약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 선별진료소
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정부에서 제공되는지? ·· 14

Q10.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인지?
3. <mark>방역 관련</mark> ···································
Q1. 개인보호구 4종이라 함은?
[ 음성확인서 ]

Q4. 소견서 발부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하는지? 20 Q5.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서식지가 아닌 문자 형태도 가능한지? 21 Q6. 검사 결과 발급하는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1
4. 재택치료 관련 22
Q1. 참여 의료기관은 모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 신청해야 하는지? 22
Q2. 재택치료는 주간만 신청이 가능한지? ······ 22
Q3. 주간에만 참여하고 싶은데 야간 환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22
Q4. 야간 협력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22
Q5. 현재 24시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운영 중인데, 주간형
재택치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23
Q6. 주간 재택치료 참여시 주말·휴일에는 어떻게 환자 관리를 하는지? 23
Q7. 주말·휴일 전화대기(On-Call)시 가능한 활동은 무엇인지? ······ 23
Q8. 주거지와 무관하게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지? 28
Q9. 재택치료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기준은 무엇인지? ······ 24
Q10.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는지? 24
Q11. 재택치료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지? ······ 24
Q12.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한지? ······· 25
Q13. 재택치료시 의약품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25
Q14. 보건소 관할 내의 의료기관만 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으로
매칭 가능한지? 25
Q15. 타 지역에서 온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 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키트 배송 등을 어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하는지? ······ 25

5. <mark>건강보험 적용 관련</mark> ······· 26
Q1.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예: 1일 1회) ············ 26
Q2.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26
Q3.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요청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6
Q4.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내원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27
Q5.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급여로 PCR 검사 수행하였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 방법은?·27
Q6. PCR 음성 확인 후 입원치료 중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PCR 시행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7
Q7.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RAT가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28
Q8.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시 별도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28
Q9. 입원 전 환자가 PCR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및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도 PCR 건강보험 대상인지? ············· 28
Q10. 현재 기준외에 PCR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검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급여 인지? 28
Q1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 29
Q12.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동일한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요? ························· 29
Q13. 신속항원검사 시 지정 의료기관 당 하루 10건까지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약 3.1만원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지정 의료기관 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0

6. <mark>기타</mark> ····································
Q1.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붙임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검사-치료 흐름도 32 붙임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작성 요령 및 신청서 33 붙임3. 신속항원검사 제품 국내 허가 현황 ('22.1.13.기준) 35 붙임4.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36

#### [ 보도참고자료(보건복지부, 1.28)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지정 의료기관(이하 동일) = 호흡기전담클리닉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일반사항

#### Q1.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 오미크론의 경우 전파력은 높아진 반면,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은 감소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 많은 국민들이 3차 백신접종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임
-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동네 의료기관**도 **코로나19 의료대웅**에 참여하여,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 정부도 이러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발표(1.21일, 1.28일)한 바 있음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sup>①</sup>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sup>②</sup>코로나19 검사, <sup>③</sup>검사 후 재택치료까지 환자에 대해 의료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됨(붙임1 참조)

#### Q2.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 하면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역할은 하지 않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만 실시하는 것으로도 운영 가능

#### Q3.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신청을 해야 함(붙임2)
  - 다만, 2월 3일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 하의사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 심평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2.8.)한 이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 하는 방법은 재안내할 예정
  - ※ 당초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으로 안내되었고 신청서에도 해당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됨
- 유의사항으로서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 재택치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한 별도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신청 필요

# Q4.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운영하다가 그만 둘 수 있나요?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임
- 따라서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를 **같이 수행**하다가 **신속항원검사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Q5. 서울형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형 모형과 함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요양기관 운영 현황에 '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기관'으 로 체크
- 또한, 야간 대응체계에 '의료기관 내'로 체크하되, '의료기관 협력 당직 운영' 또는 '야간센터 운영'으로 부기해 주시기 바람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환자를 재택치료자로 관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간만 맡거나, 주치의로서 24시간 모니터링 관리가 가능함. 그리고 「서울형 재택치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동시 수행이 가능하나, 재택치료 수행 방식의 차이가 있음

- Q6. 병원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제외한 병원급은 **기존 방식과 동일**한 24시간 대응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운영** 가능함

#### 2. 진단검사 관련

#### Q1. 신속항원검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 ②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Q2. 고위험군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내원시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하도록 안내해야하는지?

- 원칙적으로 집중관리군(고위험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집중관리군(고위험군)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먼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진찰료 부담 필요

#### Q3. 의사 진찰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실시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음.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후 진행해야함

- Q4.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위한 검체체취를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함.
- Q5.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음
- Q6. 운영지침에 따른 신속항원검사는 어떠한 검사키트를 활용하는 것인지?
- 식약처 허가에 따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이하 "신속항원검사")를 말함
  -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종류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일반용(자가검사용)과** 전문가검사용이 있으며,
  -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할 신속항원검사는 것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이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이며, 신속항원검사키트 제품 국내 허가현황은 붙임3 참조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일반용(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 Q7. 발열, 호흡기 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행 인지 아니면 신속항원검사를 PCR 검사 전에 먼저 시행해야하는지?
- 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수행한 후 그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함
- Q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지?
- 지급하지 않음. **지정 의료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워검사키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 가능**
- Q9. 만약 지정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정부에서 제공되는지?
- 제공되지 않음.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는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이며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해당하지 않음
- Q10.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인지?
-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가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수가를 적용받을 수는 없음

### Q11.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PCR 검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진 여부**를 결정
  -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보건소에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신고할 필요는 없음

# Q1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를 제외한 의약품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나,
 만약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가급적 보호자를 통해 처방 의약품 등
 수령을 권장

# Q13.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PCR 검사도 해야 하나요?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 필요한 조치를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수행함으로써 **환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체 채취 등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Q14.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지?
-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수행 가능하며, 다만,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등 추가 수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에서만 적용 가능함
- Q15.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와 지정 의료기관의 검사 기준 차이가 무엇인지?
- 지정 의료기관은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의 환자, ② 의사의 진단 결과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워검사-PCR 검사 수행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2.3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PCR 검사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적용(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PCR 검사는 전액 본인 부담)
  -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④ 신속항원・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

#### 3. 방역 관련

#### [ 방역·소독 등 ]

#### Q1. 4종 개인보호장비라 함은?

○ 일반적으로 4종 개인보호장비라 함은 ① 마스크(KF94 이상), ②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쉘드 등), ③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 가운), ④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장갑)을 말함

### Q2.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할 때, 검체를 채취할 때 매번 4종 개인보호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나요?

- 검체 채취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4종 **개인보호장비 교체 여부** 는 원칙적으로 감염 가능성에 대한 해당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내원한 경우, 공간 환기, 의심환자가 머무른 구역의 표면 소독 등도 질병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판단해야 함
- 예를 들어, 검체 채취과정에서 비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운, 장갑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하는 것이 원칙

### Q3.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어느정도 소독·환기해야 하는지?

○ 양성 환자가 머무른 구역 및 호흡기 비말이 발생하여 오염된 구역의 표면 소독 및 환기 실시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Q4.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감염병전담병원** 등 환자를 격리시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수거**하도록 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마다,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마다 수거해야 하나.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은 매일 수거해야 함
- 그러나, 주로 **경증환자**가 **내원**하고 처치 등 **진료행위**가 기존 병원의 입원치료와는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확인**시, 사용된 검사도구 및 4종 개인보호장비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되,
  - 전용용기 투입 전후 내·외부를 소독하고, 최대 15일 내에 배출하여 수거처리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

# Q5.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PCR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역학조사 대상인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사실만으로 역학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Q6. 신속항원검사 이후 PCR 검사를 통해 내원한 환자가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폐쇄되나요?

- 내원한 환자가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소독·환기**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 가능
- 각 보건소 방역 역량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 적절한 보호구 착용시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4종**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의료진의 경우,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 또한, 진료 대기 환자도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지 않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였다면, 확진자가 내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음

#### < 보건소 접촉자 조사/관리 기준 >

#### ● 시설(의료기관)조사 여부

-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대상 접촉자 조사하지 않음(다만, 대응역 량이 가능한 지자체는 조사 가능)

#### ❷ 접촉자 분류기준

- 적절한 보호구 착용 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음
- 의료진, 대기자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 한 경우 접촉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구 착용이 미흡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력 기반 격리 또는 수동감시 조치

#### ❸ 밀접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구분	<b>예방접종 접종완료자</b>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밀접접촉자	<b>수동감시</b> (6~7일차 PCR 검사)	<b>7일 격리</b>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 음성확인서 ]

- Q1.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대한 별도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양식은 있는지?
- o 음성확인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소견서의 형태로 발급 가능**
- Q2.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신속항원검사 키트 자체로도 가능한지?
- ㅇ 가능하지 않음
- Q3.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을 위한 소견서(또는 음성확인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입되어야 하는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사실과 검사 시점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Q4. 소견서 발부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하는지?
- 종전 의료기관 **소견서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수행**

- Q5.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서식지가 아닌 문자 형태도 가능한지?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문자 형태로 가능하지 않으며 종이 형태로만 가능**
- Q6. 검사 결과 발급하는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임
  - 신속항원검사 후 PCR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임

#### 4. 재택치료 관련

- Q1. 참여 의료기관은 모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 신청해야 하는지?
-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지자체를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신청 필요

#### Q2. 재택치료는 주간만 신청이 가능한지?

지정 의료기관의 재택치료는 24시간 관리형과 주간형 두 가지
 운영형태로 신청 가능

# Q3. 주간에만 참여하고 싶은데 야간 환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ㅇ 주-야간 별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 야간 상담은 야간 포함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야간 협력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등에서 대응함

#### Q4. 야간 협력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각 시·군·구(혹은 시·도)가 주간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과 **야간 협력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매칭하여 안내할 예정**임

- Q5. 현재 24시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운영 중인데, 주간형 재택치료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지?
- 기존 24시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동일 방식으로 운영 가능
- Q6. 주간 재택치료 참여시 주말·휴일에는 어떻게 환자 관리를 하는지?
- 의원급의 경우 휴일(공휴일 포함)은 환자정보 접근 및 신속한 유선 대응 등 모니터링이 가능할 시 자택에서도 전화대기(On-Call) 형식의 모니터링 가능
- Q7. 주말·휴일 전화대기(On-Call)시 가능한 활동은 무엇인지?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재택환자를 관리할 경우, 야간 및 주말·휴일은 자택에서 전화대기(On-Call)하는 것이 원칙
- Q8. 주거지와 무관하게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지?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관리하게 되나, 집중관리군(60대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으로 재배정

#### Q9. 재택치료 격리해제시 격리해제 기준은 무엇인지?

- o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경과를 기준으로 정해짐** 
  -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시(이 기간 동안 임상 증상 미발생)
  -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7일 경과시(단,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Q10.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는 어디에서 하는지?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 진료가 필요할 시, 해당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청 후 외래진료센터 진료 예약

#### Q11. 재택치료자에 대한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지?

- 재택치료자가 투약 조건에 적합할 시 팍스로비드 처방 가능
-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 판정을 통해 확정된 확진자 중,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만 가능
  - \*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
  - 단, 병용금기약물 투여자, 중증 신장애, 중증 간장애 환자 제외
    - \* 치료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4판)' 확인

#### Q12. 팍스로비드 처방은 PCR 양성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한지?

○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이 확인되어야 처방 가능함

#### Q13. 재택치료시 의약품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보건소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이메일, 팩스 등)하고 보건소에서 의약품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
  - \* 상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 참조

### Q14. 보건소 관할 내의 의료기관만 야간 협력 관리의료기관으로 매칭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관할 내 관리의료기관 매칭 필요
- 다만, 가능한 관할 내 의료기관이 없으면 **관할 밖 의료기관도 매칭 가능**

# Q15. 타 지역에서 온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키트 배송 등을 어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하는지?

o 확진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확진자 관리가 필요함

#### 5. 건강보험 적용 관련

- Q1.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 가능 횟수(예: 1일 1회)
- 외래 내원 시 1회 적용 가능
- Q2.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적용됨. 신속항원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 <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 Q3 참고)
- Q3.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요청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지정 의료기관에서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Q4.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목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내원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감염예방관리료 및 진찰료 산정 가능
  - \*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이며, 진찰료는 법정외래본인부담률 적용
- Q5.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자가 해외출국용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비급여로 PCR 검사 수행하였는데,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 처리 방법은?
-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로 건강보험 적용 가능
- 또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 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환자부담금은 국비지원** 가능함
- Q6. PCR 음성 확인 후 입원치료 중에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PCR 시행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사례정의 환자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적용됨

- Q7. 외래로 내원한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는지?
- 무증상자에 대한 입원 전 신속항원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 아님
- Q8.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시 별도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지?
-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환자에게 비급여 징수 불가)
- Q9. 입원 전 환자가 PCR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 및 환자의 보호자, 간병인도 PCR 건강보험 대상인지?
- 병원급 의료기관(의원 등 제외) **입원환자에 한해 PCR 건강보험** 적용 가능하며, 환자 보호자 및 간병인은 건강보험 적용 불가
  - \* 다만,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취합검사(pooling)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Q10. 현재 기준외에 PCR을 강하게 원하는 사람은 검사를 해주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비용은 비급여 인지?
- 급여기준 외 본인이 원해서 PCR 실시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며,
  음성확인 및 서류 제출을 위한 PCR 검사는 원칙적 비급여에 해당함

#### Q11.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지금까지는 24시간 2~3회 모니터링을 전제로 모든 재택치료 환자에게 동일한 수가(약 83,000원, 의원 기준)를 산정
  - **앞으로는 ①환자군**\*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되며**, **②**일반관리군의 경우 주간과 야간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이 분리 적용**될 수 있음
  - \* 집중관리군(고위험군), 일반관리군(저위험군)으로 나뉨

####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변경(안) 】

(단위: 원)

	<b>집중관리군</b> (고위험군)	일	군)	
종별	24시간 관리	24시간 관리	주간 관리	야간 관리
			(09~19시)	(19시~익일09시)
병원급 이상	약 82,000	약 61,500	약 30,300	약 31,200
의원	-	약 62,400	약 30,800	-

- \* 2022년 점수당 단가 기준
-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2월초)

#### Q12. 신속항원검사와 다른 질환 진료를 동일한 날 실시한 경우, 각각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요?

-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 가능
  -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날에 다른 질환(예: 고혈압)을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 가능
  - 다만, 의료기관에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다른 상병(예: 고혈압)을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동일한 날 진찰한 경우에는 별도 진찰료 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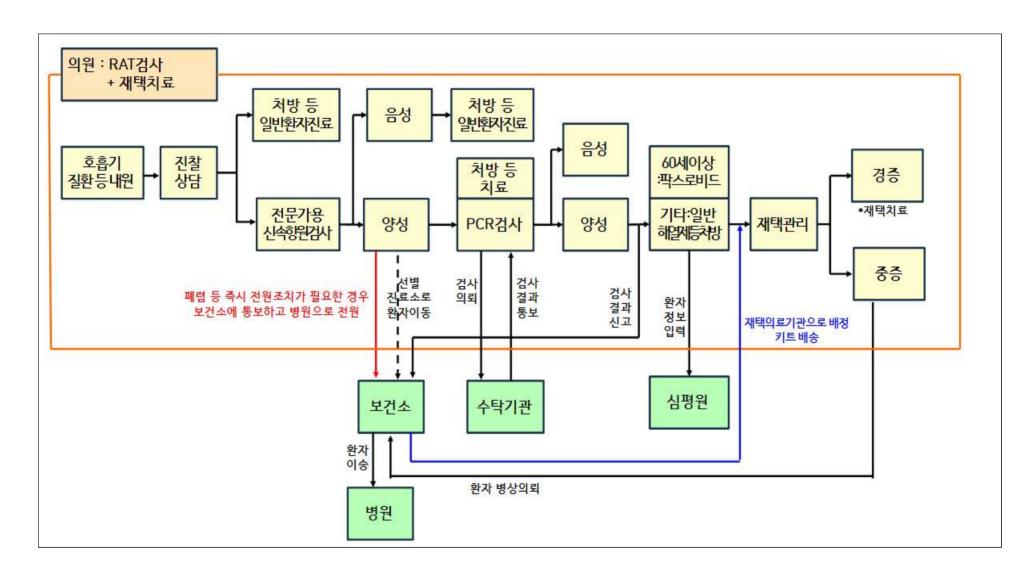
- Q13. 신속항원검사 시 지정 의료기관 당 하루 10건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약 3.1만원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지정 의료기관 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과 관련하여 지정 의료기관 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산출·적용하는 것은 지정 의료기관에 의사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기본전제로 하며,
  - 2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사 당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 6. 기타

- Q1.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의사가 입원·격리조치되어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Q2. 지정 의료기관으로 운영하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등의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붙임4 참조)
- 유급휴가 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붙임1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검사-치료 흐름도



### 1. 기본정보 작성

○ (병·의원 정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명, 기호, 주소 등 의료기관 기본정보 작성

#### 2. 운영현황 작성

- (운영형태)
- ① (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 검사와 재택치료관리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선택
- ② (신속항원검사기관)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만 진행할 경우 선택
- (PCR 검사 여부)
- (가능)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왔을 때, 의료기관 자체적으로PCR 검체 채취하여 결과 분석이 가능하거나 수탁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 선택
- ② (불가능)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왔을 때, 병·의원 내 PCR 검체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할 경우 '불가능' 선택
- (야간 대응체계) 운영형태 중 '신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치료관리 기관'을 선택한 의료기관만 <u>야간 재택치료 관리 대응 방법</u> 선택
- (의료기관 내) 의료진이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모니 터링 하는 경우 선택
- ②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협력병원) 주간에는 환자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재택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타 병·의원으로 환자 모니터링 기능을 이관하는 경우 선택
- ③ (On-call) 주간에는 환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On-call로 재택치료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선택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서							
요양기관	<b>관명</b>					기관 기호	
주	주 소		요인	당기관 종별			
관할 보	건소				운영	가능 일자 <sup>1)</sup>	
			요 영	양기관	운영형	현황	
운영형태		신=	속항원검사기관 및 재택	택치료관	리기관	□ 신속항	원검사기관
PCR 검시 여부	F _	가능	<u>l</u>  0			□ 불가능	
야간 대응체계		의로	료기관 내	지 : (협	정된 햩	관리기관으로  력병원 양기관명, 번호)	⊡ On-call
위 요양 여를 신청 <sup>*</sup>			문가용 신속항원검시	<b>ት를</b> 진학	행하는	「호흡기 전	<u>]</u> 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
			년		실 l 설 자()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성	명			대표	전화번호	
작성자 (모두 <i>:</i> 작성)	소속부	-서			핸드폰 번호		
	직	책			0	메일	
※ 작성요령 1) 선택한 운영형태가 가능한 일자							

### 붙임3 신속항원검사 제품 국내 허가 현황 ('22.1.13.기준)

연번	업체명	대표번호	제품명	허가일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031-300-4000	STANDARD™ Q COVID-19 Ag Test	′20.11.11.	
2	(주)젠바디	041-523-8590	GenBody COVID-19 Ag	′20.12.24.	
3	에스디바이오센서(주)	031-300-4000	STANDARD™ F COVID-19 Ag FIA	'21.1.5.	
4	(주)래피젠	031-427-4677	BIOCREDIT COVID-19 Ag	′21.3.18.	
5	휴마시스(주)	031-8085-6200	Humasis COVID-19 Ag Test	′21.3.18.	
6	휴마시스(주)	031-8085-6200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21.4.23	자용
7	에스디바이오센서(주)	031-300-4000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21.4.23	자용
8	㈜수젠텍	042-364-5001	SGTi-flex COVID-19 Ag	′21.5.25	
9	㈜젠바디	-	GenBody FIA COVID-19 Ag	′21.6.21	
10	피씨엘(주)	02-2144-3901	PCL COVID19 Ag Gold	′21.6.23	
11	㈜래피젠	031-427-4677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21.7.13	자용
12	바디텍메드(주)	033-243-1400	ichroma™ COVID-19 Ag	′21.7.13	
13	바디텍메드(주)	033-243-1400	AFIAS COVID-19 Ag	′21.7.15	
14	㈜녹십자엠에스	080-297-9000	GENEDIA W COVID-19 Ag	′21.7.29	
15	프리시젼바이오(주)	042-867-6300	PBCheck COVID-19 Ag	′21.8.3	
16	(季)비비비	-	MARK-B™ COVID-19 Ag	′21.8.9	
17	프리시젼바이오(주)	042-867-6300	Exdia COVID-19 Ag	′21.8.10	
18	㈜미코바이오메드	1661-6555	VERI-Q COVID-19 Ag Rapid Test	′21.8.20	
19	웰스바이오(주)	-	careUS™ COVID-19 antigen	′21.8.25	
20	아산제약(주)공도지점	02-3290-5700	Asan Easy Test COVID-19 Ag	′21.9.9	
21	㈜한국애보트진단	031-8014-6700	Parbio™ COMD-19 Ag Rapid Test Device (Nasopharyngæl)	′21.9.28	
22	㈜원메디칼	032-219-0777	WonMed Covid-19 Ag(WMCOVAG-25T)	′21.11.10	
23	(주)제트바이오텍	043-278-0075	AnyLab COVID-19 Ag Test Kit	′22.1.11	
24	주식회사 엑세스바이오코리아	-	CareStart COVID-19 Ag Plus	′22.1.11	
25	(주)켈스	031-754-0320	AllCheck COVID19 Ag	′22.1.13	

※출처: 식약처 홈페이지, 각 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 기준

#### 붙임4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아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2020.2.17.~별도 공지시 까지)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기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기를 제공한 시업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 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 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 지원제외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감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